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
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폭행·상해·성희롱 등의 이용자 금지행위를 규정하고, 이용자가 금지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, 제공자는 제공인력 채용 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조치를 요청하도록 하며,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, 제공인력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액에 가산된 이자를 징수하도록 하고, 제공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, 일정한 경우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공자의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(법률 제19894호, 2024. 1. 2 공포., 2025. 1. 3. 시행)됨에 따라 범죄경력조치의 절차,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, 위반사실 공표의 방법 및 절차, 포상금 지급의 기준·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부당이득 조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제공자가 제공인력 채용 시 경찰관서에 범죄경력 조회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(안 제2조의3 신설).
- 나. 부정수급 제공자·제공인력·이용자에 대한 부정수급액에 대하여 징수하는 이자를 정함(안 제4조제3항 신설).
- 다. 제공자가 부정수급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를 공표하도록 공표의 방법, 절차를 마련(안 제6조의2 신설).
- 라.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고 포상금의 상한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마련 (안 제7조, 안 제8조의2제4항 신설)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3(범죄경력조회 절차 등) ① 제공자는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채용하려는 제공인력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제공자는 관할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이 경우 채용하려는 제공인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채용하려는 제공인력이 법 제17조의2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공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, 동의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법 제21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”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(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「은행법」에 따라 설립된 은행

중 전국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값으로 한다)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. 이 경우 이자의 계산 기간은 해당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징수할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며, 연 단위로 계산한 이자를 부당이득에 포함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위반사실의 공표)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·군수·

구청장이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공자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공표할 경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.

1. 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
2.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
3. 기관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
4. 위반 내용(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)
5. 처분일 및 기간, 처분권자, 처분 내용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문 또는 「방송법」에 따른 방송 등을 통해서도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할 수 있고,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(인터넷 홈페이지가

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에도 이를 게시하게 할 수 있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절차 및 방법, 공표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”을 “제28조제2항, 제29조제3항 및 제32조의2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”를 “법 제34조제2항제1호에서 제3호(제3호의 업무 중에서 부당이득의 징수 업무는 제외)까지”로 한다.

5.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

제8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그 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. 법 제32조의2에 따라 연간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.

제8조의3제3항제5호 중 “징수”를 “조사·징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

1호 중 “법 제17조에 따른 제공자”를 “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
제공자와 제공인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조의3(범죄경력조회의 절차 등) ① 제공자는 법 제17조의3 제1항에 따라 채용하려는 제공인력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제공자는 관할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채용하려는 제공인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</u> <u>③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채용하려는 제공인력이 법 제17조의2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공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.</u> <u>④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, 동의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u>
제4조(부당이득의 징수) ① · ②	제4조(부당이득의 징수) ① · ②

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(현행과 같음)

③ 법 제21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”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(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「은행법」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값으로 한다)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. 이 경우 이자의 계산 기간은 해당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징수할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며, 연 단위로 계산한 이자를 부당이득에 포함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.

제6조의2(위반사실의 공표)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공자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공표할 경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.

1. 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
2.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

및 내용

3. 기관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
자 성명

4. 위반 내용(위반행위의 구체
적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
한다)

5. 처분일 및 기간, 처분권자, 처
분 내용
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
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
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지체
없이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
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시하
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
·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
는 경우에는 「신문 등의 진흥
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문 또
는 「방송법」에 따른 방송 등
을 통해서도 법 제25조의2제1항
에 따른 공표를 할 수 있고, 제
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(인터넷
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
다)에도 이를 게시하게 할 수
있다.

제7조(업무의 위탁) ① 보건복지
부장은 법 제27조제2항, 제28
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
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
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삭제

<신설>

② (생략)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
3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
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
탁한다.

제8조의2(포상금 지급의 기준·방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
항에 따라 공표한 때에는 지체
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·광역
시장·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
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
정한 사항 외에 공표절차 및 방
법, 공표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
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
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7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
----- 제28
조제2항, 제29조제3항 및 제32
조의2제2항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5.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
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법 제3
4조제2항제1호에서 제3호(제3
호의 업무 중에서 부당이득의
징수 업무는 제외)까지-----
-----.

제8조의2(포상금 지급의 기준·방

법 및 절차 등) ① ~ ③ (생략)

<신 설>

④ · ⑤ (생략)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,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8조의3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· ② (생략)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(제7조 제3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

법 및 절차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그 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. 법 제32조의2에 따라 연간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.

⑤ · ⑥ (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)

⑦ ----- 제6항-----

-----.

제8조의3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1. ~ 4. (생략) 5. 법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사무 6. (생략)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1. 법 제17조에 따른 제공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. ~ 4.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-- 조사·징수---- 6.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제공자와 제공인력--- 2. ~ 4. (현행과 같음)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227